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194
----------	------

2018. 2. 27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1. 제안경위

- 2017. 10. 30 우미경 의원 발의 (2017. 11. 1 회부)

## 2. 제안이유

-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이사회 구성 시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 3. 주요골자

- 이사회 구성 시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함(안 제16조)

## 4. 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이사회 구성 시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양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우미경 의원이 발의하여 2017년 11월 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임.

현행	개정안
제16조(이사회) ① (생략) ②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단서 신설>	제16조(이사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u>다만 이사회 구성 시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u>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사회 구성의 적용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이사회 구성원의 결원 또는 임기만료의 사유 등으로 새로이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현재 SH공사 업무에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되는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4인 이내의 상임이사와 10인 이내의 비상임이사(2명은 근로자이사)로 구성하게 되어 있어, 이 개정조례안에 따를 경우, 특정성별 이사가 최소 6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임.
- 「지방공기업법」 상 지방공사의 사장과 비상임이사의 임면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장을 제외한 상임이사 임면권은 사장이 가지는 바<sup>1)</sup>, 사장의 임명과 당연직 비상임 이사의 구성은 최종적으로는 시장의 권한으로 공사에서 관여하기 어려운 사안이며, 근로자이사 역시 근로자의 투표로 선정하는 선출직(임면권은 시장)<sup>2)</sup>으로 그 성별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기 어렵다 하겠음.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공개모집으로 선발하는 총 9인

1)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2항 및 제7항

2)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제10조제4항

이내(상임이사 3인, 비상임이사 6인)의 이사 중에서 6명 이상을 특정성  
별로 할당 임명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SH공사 이사회 구성>

분류	직위	인원	임면권자
계		14인(이내)	-
상임이사	사장	1인	시 장
	<b>상임이사</b>	<b>3인</b>	<b>사 장</b>
비상임이사	(당연직) 市 주택건축국장	1인	시 장
	(당연직) 市 재정기획관	1인	시 장
	<b>비상임이사</b>	<b>6인</b>	<b>시 장</b>
	근로자이사	2인	시장 (근로자선출)

- 한편, 대법원에서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관구성원 임명·위촉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임명·위촉권의 행사에 대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견제나 제약을 규정하고 있거나 그러한 제약을 조례 등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당해 법령에 의한 임명·위촉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하위법규인 조례로써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명·위촉권을 제약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3. 2. 9. 선고 92추93 판결 참조)”라고 판시한 바 있어, 이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지방공기업법령과 지방자치법에 반한다는 논란을 불러올 소지가 있음.
- 그러나, 이 개정안은 위원회 구성시 성별 균형을 맞추도록 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sup>3)</sup> 및 서울시 성평등기본조례 제16조의 규정 취지를 반영한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

것으로, SH공사의 의사결정에 있어 특정 성의 과도한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의미로 해석되며, 성별 균형 노력을 촉구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할 것임.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제약 및 현실적 실현 가능성의 한계<sup>4)</sup>에도 불구하고 개정조례안대로 할 경우, 개정 규정의 적용시기로 조례 시행 후 새로 임명하는 이사부터 적용한다면, 현재 이사회가 모두 남성으로 구성(붙임 참조)되어 있어 새로 구성되는 이사는 모두 여성을 임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부담을 지우게 되는 것으로 인사운영에 왜곡이 일어날 수 있겠음. 이에 이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 서울시와 SH공사는 이사회의 중장기 성별 구성 계획을 수립·공개하여 운영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하겠음.

---

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2016년말 진행한 비상임이사(3인) 공모에서 총 13명이 지원하였으나 여성은 지원하지 않았음.

## [붙임] 서울주택도시공사 임원 현황

구 분	직 위	성 명	출생년도 (성별)	임 기
상 임 사	사 장	김세용	1965 (남)	2018.1.1. ~ 2020.12.31
	기획경영본부장	공석		
	주거복지본부장	신범수	1960 (남)	2016.12.20. ~ 2019.12.19
	건설안전사업본부장	장달수	1958 (남)	2017.01.19. ~ 2020.01.18
상 감 사	감 사	김현식	1958 (남)	2016.01.01. ~ 2018.12.31
비 상 임 이 사	당연직이사 (재정기획관)	박대우	1966 (남)	2018.01.01. ~ 재직기간
	당연직이사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1960 (남)	2015.07.01. ~ 재직기간
	사외이사	김00	1951 (남)	2015.12.01. ~ 2018.11.30
	사외이사	임00	1946 (남)	2015.12.01. ~ 2018.11.30
	사외이사	이00	1955 (남)	2017.1.11. ~ 2020.1.10
	사외이사	정00	1959 (남)	2017.1.11. ~ 2020.1.10
	사외이사	하00	1947 (남)	2017.1.11. ~ 2020.1.10
	근로자이사	박00	1978 (남)	2018.1.22. ~ 2021.1.21
	근로자이사	김00	1974 (남)	2018.1.22. ~ 2021.1.21